

제302회 정례회  
2011. 7. 22.(금)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7. 22.(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1년 6월 30일
- 다. 회부일자 : 2011년 7월 7일
- 라. 상정일자 : 2011년 7월 14일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성수)

### 가. 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선5기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남부출장소를 설치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 남부출장소 설치

- 시행시기 : 2012. 1. 1.
- 관할구역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담당사무
  -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손자용)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선5기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2010년 12월 27일 북부출장소를 개칭한 후, 보은, 옥천, 영동군을 관할하는 남부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남부출장소는 2012년 1월 1일 개칭하며,
- 관할구역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3군으로 하고,
- 담당사무는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과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임.

남부출장소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부출장소에 이어 보은, 영동, 옥천군을 관할할 남부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남부출장소 개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제57조 앞에 “제1절 충청북도북부출장소”를 삽입하며,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설치)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이하“북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북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

③ 북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

제58조 중 “출장소”를 “북부출장소”로 한다.

제59조 본문 중 “출장소장”을 “북부출장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출장소”를 “북부출장소”로 한다.

제59조 다음에 제2절(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충청북도남부출장소

제60조(설치)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북도남부출장소(이하“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남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

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보은군, 옥천군 및 영동군으로 한다.

제61조(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2조(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출장소</p> <p>제57조(설치) ①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북부지역에 <u>충청북도 북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u>를 설치한다.</p> <p>② <u>출장소의 소재지는 관할구역 내에 둔다.</u></p> <p>③ <u>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u></p> <p>제58조(소장) <u>출장소에</u>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59조(소관사무) <u>출장소장은</u>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출장소</u>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li> <li>2. ~ 3. (생략)</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출장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충청북도북부출장소</b></p> <p>제57조(설치)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u>충청북도북부출장소(이하 "북부출장소"라 한다)</u>를 설치한다.</p> <p>② <u>북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u></p> <p>③ <u>북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u></p> <p>제58조(소장) <u>북부출장소에</u>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59조(소관사무) <u>북부출장소장은</u>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북부출장소</u>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li> <li>2. ~ 3. (현행과 같음)</li> </ol>
<p><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충청북도남부출장소</b></p> <p>제60조(설치)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u>충청북도남부출장소(이하 "남부출장소"라 한다)</u>를 설치한다.</p> <p>② <u>남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u></p> <p>③ <u>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보은군, 옥천군 및 영동군으로 한다.</u></p> <p>제61조(소장) <u>남부출장소에</u>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62조(소관사무) <u>남부출장소장은</u>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남부출장소</u>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li> <li>2. <u>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u></li> <li>3. <u>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u></li> </ol>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